

# 『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영태, 강승수, 김영길, 김정도, 박세채  
이정희, 허민근 의원(7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김 영 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 관한 성과 관리를 강화시키며,
-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다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4조)
- ESG 추진계획 수립,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협력체계의 구축(안 제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55조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1. 18. ~ 11. 23.)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」 은,
  - 구미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,
  -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인식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므로 도입 초기 단계인 ESG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,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

협력체계 구축 등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  
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 : 원안가결